

2026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5조 및 「2026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참여 제한(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적용)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이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3 신청개요

- 접수기간 : 2026. 2. 2. (월) ~ 2. 19. (목) 18:00 까지
 - 접수 마감 이후 수정 불가하며, 접수 기간 내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접수처 : 관할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온라인 접수
 - 전산 관련 문의 : 사회적기업 포털 시스템 이용 문의(☎ 1661-4006)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광주광역시 소재의 법인·단체

지정요건

※ [붙임1] 참고

- ① 조직형태
- ② 사회적목적 실현
- ③ 영업활동 수행
-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⑥ 교육이수

-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만 신청 가능

신청 제한 사항

-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지정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진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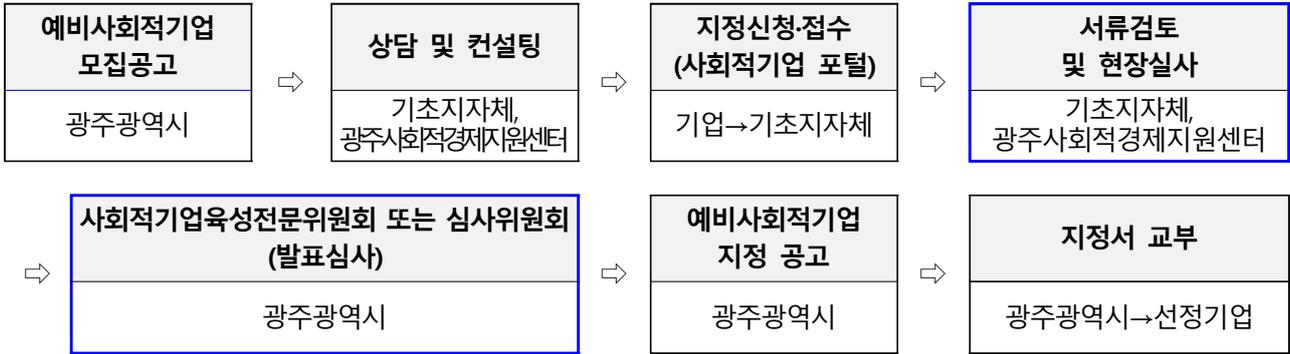
5

제출서류

※ 모든 구비서류는 'PDF 형식' 온라인 제출

연번	구분	증빙서류 및 서식	필수여부	비고
1	신청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필수	
2	사업계획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필수	
3	조직형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지점 포함) □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국세청 홈텍스 발급) □ 주주명부(주식회사만 해당) □ 조합원명부(협동조합만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필수	고유번호증 불인정
4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 7> □ 근로계약서(2026.1.31. 기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6.1.31.~2026.1.31. 기준)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회서(직전 3개월 기준) □ 임금대장(2026년 1월) □ 급여이체내역서(2026년 1월)	해당 시	사회적기업포털 (www.seis.or.kr) '원클릭서비스' 필수 제출
5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 2~6>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표 □ 서비스 수혜자인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포함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신청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해당 시	
6	영업활동	□ 2025년 추정(가결산)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 실적기간 : 2025. 1. ~ 12. □ 계정별원장(필요 시)	해당 시	회계(세무)사 확인자료만 인정
7	정관·규약	□ 정관 또는 규약 -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확인인증) 받은 정관 -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등 □ 비영리조직(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의 제·개정 등에 대해 주무관 청 허가를 받는 조직이므로 주무관청 허가 공문으로 대체 가능	필수	'공증' 필수
8	사회적기업 교육이수	□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대표자만 인정) - 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 사회적기업 필수 과정 수강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 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필수	
9	기타서류	□ 대표자 이력서 □ 임대차 계약서 □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별지 제2호의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필수	

6 지정절차



- 지정공고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및 소재지 관할 구청에 통보

7 지정 설명회 개최

- 일정 : (1차) 2026. 2. 4 (수) 10:00-12:00 / (2차) 2026. 2. 6. (금) 14:00-16:00
- 장소 :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2층)
 - 사전접수 : <https://forms.gle/vk2sV6rzQQTaDvo37>
- 주요내용 :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지정 절차 등 안내

8 심사개요

- 심사일정 : 2026. 3. 18. (수) ~ 3. 19. (목) 중 1일
 - 참여기업 대상 개별 안내 예정
- 심사장소 : 광주광역시청 세미나실(예정)
- 심사방법 : 대면심사
- 심사내용 : 「2026년 인증사회적기업 지침 지정 심사기준」 참고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부정적 사례가 있는지 여부
 - 향후 지속적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여부 등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 심사사항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9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매년 5월 말까지 사업보고서 제출**(미제출 시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 ~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10 기타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단체·법인 등)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단체·법인 등)에 있으며, 공모 참여를 위한 제출 서류는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 포털(<http://www.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제출이 완료된 서류만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함.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현장실사 및 심사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비공개함

11 문의처

-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 ☎ 062-613-1292
- (상담 및 컨설팅)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62-531-6667~8(내선1번)
- (서류 접수)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동구청	마을자치과	062)608-4633
서구청	일자리청년지원과	062)360-7622
남구청	일자리정책과	062)607-2666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62)410-6585
광산구청	시민경제과	062)960-8402

- (접수시스템)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 1661-4006

○ 공고일 기준,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① 조직형태 : 본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에 있는 법인·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 업무 지침을 준용함)
 - ※ **괜찮은 일자리** : 최저임금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반드시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이내(2025.11.~2026.01.) 전체 유급근로자 대상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5) **기타(창의·혁신)형**: 그 밖의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③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기준)
 -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경영구조, 재무구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④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 정관 등은 **접수 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세부 지정요건

-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정관에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 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배분 가능한 이윤: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세부 지정요건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가.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나.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 】

- (26.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26. 2. 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이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26.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26. 1. 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⑥ 교육 이수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수강
-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확인증 : 대표자만 인정(유효기간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대체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만 신청 가능

신청 제한 사항

-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지정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 제한
-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자진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사 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FAX)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㉗[], ㉘[], ㉙[])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보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환경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 <input type="checkbox"/> 보육 <input type="checkbox"/> 산림 보전 및 관리 <input type="checkbox"/> 가사 간병 <input type="checkbox"/>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input type="checkbox"/> 고용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유통 <input type="checkbox"/> 기타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00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6> 4.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 제2호의7> →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유급근로자 입력 및 원클릭서비스 제출 ※ 4대사회보험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 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사회적기업 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별지 제2호의 8>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9.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0. 사회적기업 온라인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11.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

< 별지 제2호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업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 유형신청	<input type="checkbox"/>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㉗[], ㉘[], ㉙[])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창의.혁신)형 <i>(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i>
조직형태	<i>(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i>
근로자 고용계획	<i>(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i>
의사결정 구조	<i>(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i>
정관 (규약)	<i>(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i>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i>(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i>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내용 (영업수입 확 보 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역량	<p>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p> <p>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p> <p>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p>
4. 사업목표	<p>4-1 연차별 매출규모</p> <p>4-2 고용창출 계획</p> <p>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p> <p>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p>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계획)
2년차	<p>(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계획)</p> <p>(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계획)</p> <p>(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p>
3년차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계획)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 별지 제2호의3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00청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별지 제2호의4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㉓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수 혜 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㉔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㉕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00청장 귀하

구비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비고

1.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별지 제2호의5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00청장 귀하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별지 제2호의6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p>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p>	
<p>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p>	<p>-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p> <p>- 관련 사업 추진 실적</p>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00청장 귀하

<p>구비서류</p>	<p>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p>	<p>수수료 없 음</p>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시,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시,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